

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281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. 6. 20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40번 「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과 이승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24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경관조명의 점등 및 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
-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을 조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장식조명을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점등과 소등시간을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2조제1항),
- 나.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을 조정하며(별표), 기타 '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4조제1항 등).

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관할 지역”을 “관할지역”으로 하고,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관할 지역”을 “관할지역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명 “위원의 해촉”을 “위원의 위촉 해제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외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 하고, “해외”를 “국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“해촉을”을 “위촉 해제를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매 회의마다”를 “회의마다”로 하고, 제19조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며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증설하고자 하는”을 “증설하려는”으로 하고, “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”을 “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, “하고자 하는”을 “하려는”으로 하고, “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”을 “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

드라인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단서 중 “국내외 행사,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”을 “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(제22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규 모
1. 건축물	공공청사
	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
	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
2. 공동주택	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3. 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
4. 공간조명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
5.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 특별시장(이하 "시장"라 한다)은 <u>관할 지역</u>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서울특별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<u>강구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관할지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마련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<u>관할 지역</u>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5조(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관할지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<u>당해</u>위원을 <u>해촉</u>할 수 있으며, 위원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14조(위원의 <u>위촉 해제</u>)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----- ----- <u>위촉 해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1.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(생략)

제16조(위원회의 운영 등)

- ① (생략)
-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.
- ③·④ (생략)

제19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별위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----- 치료가 필요한
-----국외-----
2. ----- 위촉 해제를 -----
3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위원회의 운영 등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---- 회의마다 -----
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수당) -----
-----대해서는 ----- 별
위에서 -----

제22조(조명계획의 수립 등) ①

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, 개량,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·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3조(좋은빛 형성 관리 등) ①

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·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·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점등 및 소등 운영)

제22조(조명계획의 수립 등) ①

----- 증설하려는 -----
-----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대해서는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좋은빛 형성 관리 등)

-----하
려는 -----
----- 제21조에 따
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-----
-----.

제24조(점등 및 소등 운영)

구 분	시 설 규 모
1. 건축물	<u>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, 공공청사</u>
2. 공동주택	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3. 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
4. 도로부속 시설물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
5. 주유시설	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
6. 미술작품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, 「서울특별시 동상·기념비·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심의대상
7.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

구 분	시 설 규 모
1. 건축물	공공청사
	<u>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</u>
	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
2. 공동주택	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3. 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
4. 공간조명	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
5. ~ 6. 삭제	
5.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(신설, 개량 등)